

# 特殊建物の範圍

## 百貨店・興行場・醫療施設

金 敬 中

〈企劃調査部 代理〉

### 1. 百貨店(屋內販賣場)

#### 가. 概 念

國語辭典에서는 百貨店을 「商品을 各部分으로 나누어 陳列販賣하는 大經營의 綜合小賣店」을 指稱한다 하였고, 保險料率書에서는 「한 建物の 販賣場의 面積의 合計가 330m<sup>2</sup> 以上인 建物로서 開設名稱에 關係없이 다음의 商品分類中 두 種類以上의 商品을 販賣하는 곳이거나, (다만, 한 建物안에서 둘 以上の 販賣商이 하나의 管理 아래 經營하는 것을 包含한다) 損保協會가 保險料率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發行한 全國市場危險區劃調査書에 百貨店으로 收錄된 區劃內的 物件을 말한다」고 하였다(註①). 法施行令에서는 屋內販賣場이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7號) 以上の 概念에 엄격히 拘束될 必要는 없고 「建物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不特定・多數人을 相對로 各種의 商品(飲食物包含)을 販賣하는 場所로서 市場法上的 「市場」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理解하면 足할 것이다.

屋內販賣場建物과 市場法上 市場建物과의 區別限界가 實務上 問題되고 있다. 不特定・多數人을 相對로 營利를 爲하여 商品을 賣買・交換하는 場所라는 點에서는 다른바 없으나, 市場法上的 市場은 ① 人的要件(20人以上の 名義者) ② 物的要件(建物の 一定한 施設) ③ 行政的 要件(許可)을 받드시 具備하여야 하나(註②) 屋內販賣場은 이러한 要件을 要하지 않는데 差異가 있다. 따라서 市場의 要件中 어느 하나를 具備치 아니 하였든가 缺한 때에는 屋內販賣場으로 取扱하면 足할 것이다. 保險料率適用의 問題를 除外한다면 火保法上 「市場法上的 市場」과 「屋內販賣場」과의 區別實益은 크지 않다.

아울러 日本에는 百貨店法이 있음을 附言해 둔다.

#### 나. 屋內販賣場의 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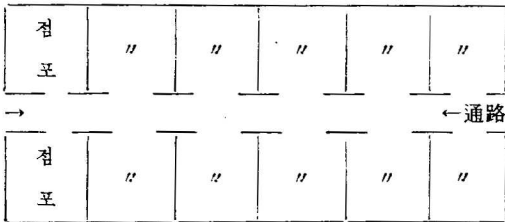
屋內販賣場建物이 特殊建物로 取扱되려면 「屋內販賣場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000m<sup>2</sup> 以上」이어야 한다(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7號). 따라서 어느 建物中 屋內販賣場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000m<sup>2</sup> 以上이면 建物全體가 特殊建物로 取扱되며 餘他部分의 所有者가 누구

인가는 不問한다.

「屋內販賣場으로 使用하는 部分」이라 함은 반드시 商品을 陳列하고 販賣하는 場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販賣를 促進 또는 그 管理를 爲한 場所 即 販賣場所의 延長이라고 볼수 있는 商品의 保管所 또는 事務室 등이 販賣場과 直接해 있거나 上·下層間에 位置해 있다면 이를 屋內販賣場에서 除外시킬수는 없다. 그러나 事務室 또는 保管所 등의 主用途가 販賣를 促進 또는 管理를 爲한 경우인 때 限하고, 主用途가 다른데 있는데, 例를 들면 農協 共同組合 建物の 主用途는 事務室이고 一部를 共販場으로 使用한다면 全體를 屋內販賣場으로 使用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結局 主用途, 面積, 機能的 關聯性 등을 參照하여 決定할 것이다.

다음 同一建物內에서 店舖들이 集團을 이루어 不特定, 多數人을 相對로 物品 또는 飲食을 販賣하는 경우에 出入口의 位置가 建物內의 通路에 面해 있을 때(圖面 1)와 出入口의 位置가 道路에 面해 있을 때(圖面 2)에 延面積을 어떻게 計算하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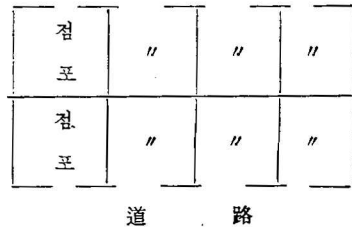
[圖面 1]



첫째 店舖의 出入口가 共通된 通路에 面해 있을 때에는 設想 個個의 店舖의 所有者가 各各 相異한 때에도 建物の 所有者의 同一性을 要求하는 것은 아니므로 火災의 延燒危險性으로 보아 全體建物を 屋內販賣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一棟建物を 數個의 店舖로 區劃되어 出入口의 位置가 道路에 面해 있을 경우 所定의 防火壁에 依하여 區劃된 때에는 屋內販賣場으로 보기는 어렵다.

[圖面 2]



### 다. 地下商街와 屋內販賣場

最近 都心地에는 地下商街가 急激히 增設되고 있다. 地下商街의 施設이 建物이나 여부에 對해 疑義가 提起되고 있으나 建築法規上 또는 一般觀會上 建築物임에는 否認할 수 없다. 빌딩內의 地下層과 建築上으로 크게 달리 取扱할 理由가 없다.

그러면 地下商街가 市場建物인가 또는 屋內販賣場인가에 對해 見解가 다를수 있으나, 市場과 屋內販賣場과의 區別實益이 크지 않은 것처럼 이 경우도 建物の 構造나 狀態 등을 고려하여 애써 구별할 必要 없이 市場法에 位하여 市場開設許可를 得한 때에는 市場으로, 不然인 때에는 屋內販賣場으로 取扱하면 足하다.

문제는 地下商街를 特殊建物로 取扱함에 있어 그 範圍 確定이다. 即 地下商街는 地下道入口부터 通路까지 포함한 全體를 商街建物로 볼 것인가 아니면 商品을 陳列한 部分만을 商街建物로 볼 것인가는 簡單치 않다. 生覺컨대 地下商街의 構造의 特殊性和 火災危險을 擔保하는 保險的 側面에서 볼 때 通路도 當然히 包含시켜야 할 것이나 道路法上 地下道는 道路의 附屬物로서 (同法施行令 第1條의 2 第8號) 道路와 같이 取扱하고 建築法에서는 地下에 施設한 建物を 建築物로 取扱하는 점(道路法 第2條)으로 보아 通路部分은 建物範圍에 包含시킨다는 것은 곤란 할 것이다.

## 2. 興行場

### 가. 概 念

興行場이라 함은 演劇·映畫, 「서커스」等을 觀覽料金を 받고 公開의으로 求景시키거나 飲食 其他 一定한 서비스를 提供하여 利用者の 興趣를 振作시키는 一切의 場所를 말한다. 이에는 公演法上的의 公演場, 映畫·텔레비죤攝影所 및 放送施設場, 料理店, 카바레 등으로 使用하는 建물이 該當된다.

### 나. 公演場 建物

#### 1. 公演場의 概念과 範圍

公演場으로 使用하는 建物中 公演法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公演場으로 使用하는 建物」란은 特殊建物로 取扱한다. 여기서 公演場이라 함은 映畫·演劇·音樂·舞踊·其他 藝術的 또는 娛樂的 觀覽物(運動이나 그 競技를 除外한)을 公衆의 觀覽 또는 聽聞(放送 또는 이와 類似한 行爲에 依한 聽聞을 包含한다)에 供하는 場所 및 施設을 말한다. 이에 屬하는 建物로서는 劇場, 映畫館, 演藝場 등이 그 代表的이다. 그러나 스포츠, 珍貴物을 觀覽할 目的으로 公衆이 集合하는 施設로서 이러한 用에 供하는 觀覽場은 여기의 公演場에 包含되지 않는다. 野球場·各種 競技場·體育館·권투장·競馬場·서커스假建物 등은 觀覽場이지 公演場은 아니다. 또한 公議·社交等의 目的으로 公衆이 集合하는 施設物인 公民館·市民廳·市區의 集合場·勞動會館·教會·結婚式場等 公會堂 또는 集合場은 公演法上的의 公演場은 아니다. 또한 遊技場法上的의 遊技場인 당구장·탁구장·기원 등은 여기의 公演場은 아니다. (遊技場法 第2條) 實際 公演場所로 使用하는 建物이라도 公演法 第7條 第1項에 規定한 假設公演場 또는 臨時公演場은 保險技術上

과 火保法의 趣旨上 特殊建物로 取扱하기는 困難할 것이다. 그리고 公演場을 設置·經營코자 하는 者는 그 設置豫定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게되어 있는 바(公演法 第7條) 無許可의 公演場이 特殊建物로 取扱되느냐 여부와, 休業中인 公演場 및 建物의 一部를 公演場으로 使用할 경우의 全體의 建物이 付保對象이 되는가 등의 問題는 私設講習所의 경우에 準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註③)

#### 2. 公演場 施設物의 特殊建物性여부

注意를 要하는 것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公演場을 設置經營할 때에는 別途의 設置許可를 得할 必要가 없지만 無許可狀態인 國立劇場 또는 世宗文化會館等도 公演場임에도 否認할 수 없는 點이다. 問題는 公演場에 設置된 客席, 舞臺, 照明裝置 및 「파이프올겐」等도 特殊建物의 範圍에 包含되는가에 關해 實際論難이 거듭된 바 있었다. 이에 關해 法施行規則 第2條의 2에 規定한 別表의 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 11. 映畫館·劇場의 客席 및 舞臺施設은 別途로 時價를 加算한다는 規定이 있어 特殊建物의 범주에 포함된다는데 別異論이 없겠으나 문제는 照明裝置 또는 「파이프올겐」에 對해서는 첫째 公演場建物의 從物내지 附合物로 볼 수 있다는 點 둘째 이러한 施設物은 火災發生時에 建物에서 分離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點 셋째 工場에 施設된 機械設備도 工場建物의 一部로 取扱해야 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點으로 보아 公演場 建物의 一部로 보아야 한다는 見解도 있으나, 公演場建物에 附着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建物의 一部가 아니라 動産에 不過하며, 從物 乃至 附合物로 取扱하는 것은 無理한 點이 있다. 더욱 公演場建物과 이러한 施設物의 關係를 工場과 機械施設과의 關係처럼 取扱할 수는 없으므로, 特殊建物의 一部로 보기는 困難하다.

### 3. 問題點

다른 特殊建物の 경우처럼 公演場으로 建物の一部를 使用할 경우 全體建물이 特殊建物로 取扱된다는 點은 餘他の 特殊建物の 경우와 別다른바 없다. 문제는 公演場으로 使用하는 建物所有者가 付保義務發生時點을 建築法上竣工檢査를 기준으로 하느냐 公演法上 竣工檢査(公演法 第7條의 2)를 기준으로 하느냐이다. 이에 對해서는 다음機會에 상세히 言及하고자 한다.

#### 다. 映畫·텔레비죤攝影所 및 放送施設 建物

映畫·텔레비죤攝影所 및 放送施設場을 公演場 또는 料理店 舞蹈場等과 같이 興行場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약간 疑問이 있으나 便宜上 興行場性을 전혀 排除할 수 없기 때문에 興行場의 범주에 包含시키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放送施設場」이라 함은 公衆에게 受信될 것을 目的으로 政治·經濟·社會·文化等 諸現象을 報道·論評하여 教養·音樂·演藝等を 전파하기 위하여 無線通信의 送信을 하는 電波管理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고 放送하는 施設을 말하고 放送法 第2條 第1項 및 第2項) 官·民營을 不問한다.

그런데 教育法에 依한 各級學校의 教育課程과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係되는 內容을 그 學生을 主對象으로 하여 行하는 放送施設도 여기서 말하는 放送施設에 包含될 것이나 學校放送 施設은 教育施設(學校施設)의 一部에 屬할 것이므로 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10號의 學校建物에 包含시켜 特殊建物로 取扱하여야 할 것이다.

映畫·텔레비죤攝影所 및 放送施設場으로 使用하는 建物이면 使用面積의 廣狹層數 및 規模여하를 不問하고 特殊建物로 取扱되나 規制法規의 施設基準에 達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라. 料理店 舞蹈場「카바레」 「바」建物

#### 1. 概 念

第9號에서는 遊興場의 代表的인 것을 規定한 것이다. 다만 本號는 食品衛生法施行令과 地方稅法施行令의 改正으로 因하여 그 補完이 不可避한 條項이다. 그렇다고 料理店等이 特殊建物에서 除外되는 것은 아니므로 現行대로 一應 理解할 必要가 있다.

「料理店」이라 함은 客室 또는 客席을 設備하여 料理와 酒類를 提供하는 場所를 말하며 그 種別은 不問한다(舊 地方稅法施行令 第103條 第1項) 또 客席에서 婦女의 接待여부는 不問한다. 飲食店·料亭·酒店·스텐드吧等이 이에 屬한다. 客席의 構造가 洋式이나 韓式이냐는 不問한다.

「舞蹈場」이라 함은 一定한 設備를 하여 一般 公衆에게 댄스를 하게하는 場所를 말한다.

「카바레」라 함은 客에게 飲食物 또는 酒類를 提供함을 主로 하고 댄스를 하게하는 施設이 있는 곳으로서 遊興과 食飲을 兼하는 場所를 말한다. 나이트클럽도 이에 屬한다.

「바」는 飲食·酒類를 提供하며 接待婦가 客을 接待하여 遊興과 食飲을 兼하는 場所를 말한다.

#### 2. 範 圍

以上の 業所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330m<sup>2</sup> 以上인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330m<sup>2</sup>未滿인 小規模의 業所인 경우에는 特殊建物로 取扱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料理店·舞蹈場·카바레 또는 「바」가 같은 建物內에 있는 경우에는 그 面積을 合算하여 延面積이 330m<sup>2</sup>가 되는가를 決定한다.

이는 同一建物內에 料理店·「카바레」·무도장等 複合的인 用途로 使用하는 경우에 單一業種으로 使用하는 延面積이 330m<sup>2</sup> 未達인 경우라도 다른 業種의 使用面積을 合算하여 330mm<sup>2</sup> 以上

이 되면 그 建物を 特殊建物로 取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工場建物の 경우는 「延面積의 合算」라 하고 여기서는 「…合算」이라고 한 것은 工場의 경우에는 數個棟을 前提로 한 것이요. 料理店等の 경우는, 1個棟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 營業名義者가 同一하던 아니던, 또 建物所有者가 同一인이던 아니던 不問한다. 同一建物內에 2個以上の 業種으로 使用하는 경우에 그 面積을 合算토록 한 것은 法施行令 第1次改正以後(74.12.31)에 비로서 認定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規定의 趣旨를 다른 경우, 即 本號에 規定한 業種과 屋內販賣場 또는 私設講習所等の 業種이 同一建物內에서 營爲되고 있는 경우에 그 面積의 合算이 可能한가에 對해서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첫째 火保法과 法施行令에 列擧된 建物は 火災發生의 危險性이 높고, 그로인한 人命被害와 財産上의 損失이 클 것이라는 豫想下에 特別한 消防設備를 要하는 業種이라는 點에 共通性이 있는 만큼 비록 別個號에 規定되어 있다 하더라도 同一建物內에 同一한 危險狀態에 놓여 있는 業種이므로 그 面積을 合算하여 特殊建物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決定하는 것이 火保法의 趣旨에도 合當하다고 한다.

둘째 이러한 見解에 對하여 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9號 後段에 「…이 경우에」라는 文句로 보아 料理店·무도장·카바레 또는 「바」로 使用하는 경우에만 그 使用部分의 面積을 合算할 수 있음이 明白하므로 이러한 趣旨를 遊興業種과 別個業種의 面積과 合算한다는 것은 지나친 法の 擴大解釋이라는 見解가 있다.

생각한데 여기서 二種의 業種이라도 同一建物內다면 그面積을 合算토록 한 것은 同號에 열거한 料理店·무도장·「카바레」또는 「바」는 약간 施設이나 飲食物等の 差異가 있을 뿐 실제 遊興業임에는 大差가 없다는 點에 基因한 것이므로 本號를 擴大해석함은 不當하다.

### 3. 問題點

本號에서 인용한 食品衛生法施行令 第9條 第2號에 規定하는 “遊興飲食店(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遊興에 從事하는 者 또는 接客婦를 두어 行하는 飲食店營業을 말한다)” 이 “大衆飲食店營業(客室面積이 33m<sup>2</sup>以上인 飲食店營業으로서 第1號 및 第3號 乃至 第7號의 飲食店營業에 屬하지 아니하는 飲食店營業을 말한다)”으로 改正되었을 뿐만 아니라 舊 地方稅法施行令 第103條의 內容이 削除되었기 때문에 舊 地方稅法施行令 第103條에 規定된 料理店·無路場·「카바레」또는 「바」는 特殊建物로 取扱할 수 없지 않나 하는 疑問이 題起된다. 이는 食品衛生法施行令과 地方稅法施行令의 改正時에 火保法施行令의 改正도 併行되었다면 이러한 모순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컨데 舊 地方稅法施行令에서 第103條를 削除한 것은 租稅政策에 立脚한 租稅法規의 側面에서 그대로 存置시킬 理由가 없기 때문일 뿐 一定規模의 料理店·舞蹈場·카바레 또는 「바」는 火災發生의 危險성과 財産 및 人命被害가 클 可能性은 如前히 存在하므로 火保法規의 保護乃至 規制領域內에 있어야 함은 否認할 수 없고, 火保法規에서 舊 地方稅法施行令 第103條를 引用한 것은 火保法規의 適用對象이 되는 遊興業所를 料理店·舞蹈場「카바레」또 「바」로 限定하기 위한 便宜上 그랬을 뿐이기 때문에 引用된 法條項 그 自體가 削除되었다고 하여 이상에 列擧된 遊興業所가 火保法規의 保護乃至 規制의 必要性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一定한 規模의 料理店等은 現行대로 特殊建物로 取扱하여야 할 것이므로, 迅速히 本號의 改正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號는 「食品衛生法施行令 第9條 第4號 乃至 第6號에 規定한 遊興飲食店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330m<sup>2</sup>以上인 建物…」이라고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註④)

### 3. 醫療施設

#### 가. 概 念

醫療施設이라 함은 醫療인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爲하여 醫療 또는 助産業을 行하기 爲한 施設을 指稱하는바 그 範圍가 相當히 廣範圍한 感을 주나 法施行令에서는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規定한 綜合病院 또는 病院으로 使用하는 建物」로 限定하여 特殊建物로 取扱하도록 하였다(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3號) 이러한 醫療施設은 多數人의 患者가 治療 또는 入院을 하고 있어 火災發生時에 人命被害가 特히 클것이 예상되므로 特殊建物로 取扱하는데 小規模의 醫療施設은 除外시키고 있다.

#### 나. 特殊建物로 取扱되는 醫療施設의 範圍

##### 1. 綜合病院

綜合病院이라 함은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醫療을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8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診療科目이 적어도 一般內科·一般外科·小兒科·産婦人科·放射線科·癲醉科·病理科·健康管理科 및 齒科가 設置되어 있고 各科마다 必要한 專門醫를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醫療法 第3條 第3項)

##### 2. 病 院

醫師가 그 醫療을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2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醫療法 第3條 第4項).

##### 3. 齒科病院·漢方病院

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3號에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規定한 綜合病院 또는 病院으로 使用하는 建物」이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여기의 「病院」에 「齒科病院」과 「漢方病院」이 包含되

는가에 對해 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의 對立은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醫療機關의 種別을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 醫院 齒科醫院 漢醫院·助産所」로 區分하고 있는 것과 關聯해서 問題되고 있다.

#### (가) 包含한다는 見解

醫療機關의 種別로 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을 各各 區別하여 規定하고 있지만 火保法の 立法趣旨나 法の 論理解釋上 「齒科病院」 또는 「漢方病院」의 規模가 「病院」과 같은 程度일 경우에는 病院의 概念에 包含시켜 特殊建物로 取扱해야 된다고 한다. 이는 말할것도 없이 字句나 法文의 文理解釋보다는 火保法の 立法趣旨를 더욱 重要視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 (나) 포함되지 않는다는 見解

이는 火保法の 立法趣旨도 重要하나 그에 못지않게 國民의 契約自由의 保護도 重要한 것이므로 法文을 무시하고 擴大解釋하여 國民의 權益을 制限할 수 없다는 立場에서 「病院」의 범위에 「齒科病院」 또는 「漢方病院」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 (다) 結語

첫째 醫療法 第3條 第4項에 「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이라 함은 醫師·漢醫師 또한 齒科醫師가 各各 그 醫療을 行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20人以上을 收容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 齒科病院의 경우에는 그 入院施設의 制限을 받지 않는다」라고 規定하여 「齒科病院」은 「病院」과 달리하고 있다는 점.

둘째 醫療法施行令 第22條에 依한 別表 施設基準에 依하면 病院은 入院患者 收容施設은 病床 20個 以上이어야 하나 齒科病院에는 10個 以上이면 足한 것으로 規定하고 있어 施設의 基準을 달리하고 있는점.

셋째 現實情上 病院의 施設이나 規模에 비교할 만한 齒科病院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醫療機關의 種別로서 嚴然히 病院과 齒科病院을 各各 區別하

여 定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見解가 타당하다.

#### 4. 問題點

一棟建物の 一部를 綜合病院 또는 病院으로 使用하고 있으면 그 建物全體가 特殊建物로 取扱되는가는 私設講習所의 경우와 類似한 同題가 提起된다. 綜合病院 또는 病院으로 建物の 一部

를 使用하고 있으면 全體의 建物을 特殊建物로 보아야 할것이다. 建物の 所有者의 同一性 또는 所有者와 使用者의 同一性 여부는 不同한다.

끝으로 이러한 醫療施設中 國軍統合病院의 診療部로 使用하는 建物에 對하여는 別途規定이 있음을 注意하여야 한다. (法施行令 第4條 第2號) <끝>

- 註① 火災保險料率書(損保協會) p.51
- 註② 筆者 特殊建物の 範圍“火災安全點檢” 第10號 p.78~79
- 註③ 筆者前記論文 p.75~76
- 註④ 食品衛生法施行令 第9條 第4號乃至 第6號

## 核發電관계 用語

美國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백수십基의 核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번 美 “드라마일” 核발전소 事故보도에서 나온 용어들은 아직도 一般人들에게 매우 생소하다. 核시설과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해본다.

△ 溶解=核연료를 원자로 心形 주변의 보호막을 용해시킬만큼 지나치게 가열하면 방사능오염이 일어난다.

△ 心形=核분열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로의 中心部. 核연료가 활동 우라늄원자들로 분열할때 열을 방출하며 이 열은 부근에있는 발전기들의 물을 증기로 만들어주어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이 작동, 전력이 생산된다.

△ 우라늄=계속적인 核분열을 일으킴으로써 核발전연료로 쓰이는 방사능물질.

△ 분열= 원자핵이 분열됨으로써 核에너지를 생산해 낸다.

△ 연료봉=원자로의 연료인 우라늄금속이 들어있는 속이 빈 파이프관.

△ 통제봉=心形에 삽입, 核분열을 中止시켜 核반응속도를 완전히 하거나 중지시키는 탄소봉.

△ 연쇄반응=우라늄원자가 분열할때 방출하는 中性子가 다른 우라늄 원자들을 분열시킴으로써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 기포=연쇄반응으로 인해 생겨난 무한한 열이 냉각수의 수소와 산소성분을 분리시킴으로써 생겨나는 기포.

△ 냉각탑=원자로에서 나온 열이 물을 증발시킴으로써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물시계형태의 탑. 이 과정으로 방사능의 유출을 막을수 있다.

△ 프레스 스파이크=원자로내의 압력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때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킨다.

△ 핵방사능=人體가 상당량 이상의 원자력을 흡수하면 세포의 변형 및 파괴를 일으킨다.

△ 밀리렘=人體가 흡수하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 보통사람은 X레이나 우주광선의 방사능을 포함하여 1년에 1백내지 2백밀리렘에 노출된다.